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답은 포인트 시범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3년 8월 10일

2023년 11월 22일

2023년 12월 18일

2023년 12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인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후 원활한 포인트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합원 포인트제도는 조합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합원 포인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게시 및 고지) 조합은 분기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조합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5조(포인트 적립)

1. 조합 활동에 따른 포인트 적립기준은 아래의 각호에 따른다.

- ① 신규조합원 추천인 - 3,000점(추천인이 다수인 경우 해당 포인트를 추천인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 ② 신규조합원 가입시 - 3,000점
- ③ 정다우니 활동 - 1,000점(1회당), 사무국에서 정다우니 포인트 공지하여 모집 시
- ④ 이사회, 위원회, 조합TFT 활동 참석 - 1,000점(매회)
- ⑤ 조합원은 각 항에 따라 중복하여 포인트를 적립한다.
- ⑥ 직원은 근무 시간 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제5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 부여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 추가, 변경될 수 있다.
(규정 개정)

제6조(포인트 사용)

1. 포인트는 정다우니위원회의 비급여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2. 포인트 사용은 조합원 본인과 등록된 세대 구성원이 사용 가능하다.
3. 포인트 사용은 1,000점 단위로 하고, 사용한 포인트는 전체 적립포인트에서 차감한다.
4. 포인트 사용 시 조합사업부와 확인하여 해당 금액권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포인트 1점은 1월에 해당한다.
6. 제6조에 명시되지 않은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기간)

1.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시범사업 기한 내로 한다. 최초 적립은 본 규정의 승인 이후로 부칙에 따라 정한다.
2. 시범사업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한다.
3. 탈퇴조합원의 잔여 포인트는 탈퇴일로부터 소멸한다.

제8조(양도) 적립된 포인트는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부터 포인트를 적립하고, 2024년 총회 후 포인트 적립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시범사업 시기) 이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